

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나20166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최지현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소송구조)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1. 10. 2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합55175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D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16,482,5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482,5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D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7. 체결된

근저당권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3. 8. 접수 제48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D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3. 27. 접수 제64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5 내지 16행과 제10쪽 1행의 각 ‘1억 5,000만 원’을 『1억 5,600만 원』으로, 제10쪽 9행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민달기, 판사 최웅영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천시 I에 있는 J건물 K동

[도로명주소] 제천시 L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공동주택(이하 생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제천시 I 대 21694.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8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18.1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 대지권 21694.8분의 71.35

2. 제천시 N

[도로명주소] 제천시 O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아스팔트싱글)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192.63㎡, 1층 121.5㎡, 2층 306.92㎡

3. 제천시 N 대 595㎡

끝.

